



오늘부터 거리두기 연장...전국 영화관·야구장 '취식 불가'

기사입력 2021-03-29 05:00 최종수정 2021-03-29 08:28

4월 11일까지 2주간 시행...'음식불가' 업종 21곳 확정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 위반시 '경고'→'운영중단 10일'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가 나들이 나선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3.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정부가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비수도권 1.5)를 29일 0시부터 4월 1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했다. 직계가족과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했다.

이는 국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400명대 밑으로 줄지 않아 내린 조치다. 대신 기본 방역수칙은 더 강화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적용 대상 시설을 기존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시설이다.

그중 영화관과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등 21개 업종에 대해선 음식 섭취를 완전히 금지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종전에 시행돼온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과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기본 방역수칙이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어 더욱 촘촘해졌다.

수칙 내용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7개다. 그중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는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로 변경됐다.

이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것을 단계와 무관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단 현장 준비 시간을 위해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적용 대상도 기존 24종 시설에서 9곳이 추가됐다. 해당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의 △마사지업·안마소다.

이들 33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작성은 금지됐다. 기존 출입자명부 작성 적용 시설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만 사용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21.3.26 기준)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현행 기본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와 시설 구분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증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연행 수도권(2단계) 14종,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증시설(5종), 유흥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자료 보건복지부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정부는 그중 21개 업종에 대해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음식섭취를 금지하는 방침을 적용했다.

그 동안 거리두기 2단계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돼온 업종은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등 12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9종이 음식 섭취 금지 시설로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기 때문에 현재 1.5단계 시행 중인 비수도권에서도 이들 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예컨대 비수도권에선 종전 영화관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불가한 것이다.

단 이러한 시설내 카페나 식당 등 음식물 섭취 목적의 공간이 있는 경우 섭취가 가능하다.

예컨대 도서관 안에 위치한 카페나 식당, 혹은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선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다. 키즈카페도 놀이공간에선 음식을 먹을 순 없지만 식당이나 카페 등 구역에선 가능하다. 국제회의장의 경우 긴 시간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회의 장소에서 식사제공이 가능하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음식섭취 금지 시설 (21.3.26 기준)

구분	현재 거리두기 체계(1.5단계)	현재 거리두기 체계(2단계)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
중점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일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스포츠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사설스포츠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아미업
기타	종교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학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2단계)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계속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10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 등은 100명 미만 참석이 허용된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m²)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대비 20% 이내로 수용이 가능하고, 스포츠 경기는 10% 안쪽이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선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비수도권(1.5단계)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과 스포츠 경기 수용인원은 좌석 수의 30% 이내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중대본은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벚꽃 등 개화 시기에 맞춰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 방역지침을 1회 위반한 시설은 기존 '경고'에서 '10일간 운영중단'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6일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4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21.3.26 기준)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자료 보건복지부		news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다중이용시설 (21.3.26 기준)

구분	실내다중이용시설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중점 관리 시설	유흥시설 5종	8㎡당 1명	8㎡당 1명
	홀덤편	8㎡당 1명	8㎡당 1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8㎡당 1명	4㎡당 1명
	노래연습장	4㎡당 1명	4㎡당 1명
	식당·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 관리 시설	실내체육시설	4㎡당 1명	4㎡당 1명
	목욕장업	8㎡당 1명	4㎡당 1명
	오락실·멀티방	8㎡당 1명	4㎡당 1명
기타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4㎡당 1명	4㎡당 1명
	경륜·경마·경정	운영 중단	수용인원 20% 이내
	카지노	수용인원 20% 이내	수용인원 20% 이내
	종교활동	좌석수 20% 이내	좌석수 30% 이내

자료: 보건복지부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lys@news1.kr

-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 뉴스1&BBC 한글 뉴스 ▶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421&aid=0005250999>